

재정건전화 규정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목 차

제1절 총칙

제1조. 목적	4
제2조. 정의	4
제3조. 적용 대상	5
제4조. 회계 원칙	5
제5조. 연맹의 역할 및 권한	5

제2절 재정건전성 확보

제6조. 손익분기점 지표의 준수	6
제7조. 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	6
제8조.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해소	6

제3절 재무자료의 제출 및 승인

제9조. 예산 심사	6
제9조의1. 재무개선안	6
제10조. 전기 심사	7
제11조. 추가 예산 심사	7
제12조. 선수비용 상한선의 활용	7
제12조의1. 선수비용의 보고	8
제13조. 세칙의 운영	8

제4절 재무위원회

제14조. 재무위원회의 권한	8
제15조. 재무위원회의 구성	8
제16조. 재무위원회의 소집	9
제17조. 재무위원회의 심의 사항	9
제18조. 재무위원회의 결정 사항	9
제19조. 시정 명령	9
제19조의1. 자료 제출 위반	10
제20조. 재무위원회의 의결방법	10
제21조. 재무위원장 대행	11
제22조. 제척	11
제23조. 재심	11

부칙

제1조. 시행일	12
----------------	----

재정건전화 규정

제1절 총칙

제1조 목적

- ①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 '연맹'이라 함)에 등록된 클럽(이하 '클럽'이라 함)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그 및 클럽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본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클럽의 재정건전화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.
 - 1) 합리적인 예산 수립
 - 2)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 유도
 - 3)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관리
 - 4) 재무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
 - 5) 리그와 클럽의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
 - 6) 지속가능한 클럽 운영 유도

제2조 정의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) "내부관리예산"은 클럽이 내부 이사회 또는 모기업/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예산안을 말한다.
- 2) "당기 선수비용 잔액"은 선수비용 상한선에서 클럽의 당기 선수비용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
- 3) "당기 선수비용 지출"이란 발생한 당기 귀속 선수비용과 당기 중 추가로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선수비용의 총합을 말한다.
- 4) "선수비용"이란 선수 기본급, 수당, 계약금, 이적/임대료, 육성지원금, 연대기여금, 훈련보상금, 중개인수수료를 말한다.
- 5) "선수비용 상한선"이란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클럽의 표준예산 내 선수비용과 예상 표준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단, 전기 중 제출된 감사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클럽의 선수비용 상한선은 표준예산 내 선수비용만 인정한다. 만일 이와 같은 클럽이 당기 중 새롭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였을 시, 예상 표준이익을 가산하여 반영한다.
- 6) "예상 표준이익"이란 표준예산상 클럽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(손실)과 법인세비용 및 전기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.
- 7) "조건부 집행유예"란 본 규정을 위반한 클럽에 양정할 수 있는 시정 명령을

재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.

- 8) "표준결손금"이란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있으며 전기 감사보고서상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클럽이 본 규정 시행 후 기록한 가장 낮은 미처리결손금을 말한다.
- 9) "총포괄손익"이란 감사보고서상 기말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에서 기초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
- 10) "표준손익계산서"는 클럽이 본 규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말한다.
- 11) "표준예산"은 클럽이 "내부관리예산"에 기초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예산안을 말한다.
- 12) "표준이익잉여금"이란 다음을 말한다 :
 - 1)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있는 클럽의 전기 감사보고서상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말한다.
 - 2)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 클럽의 전기 감사보고서상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말한다. 다만, 2023년 총포괄손익이 0을 초과하는 클럽의 경우 해당 총포괄손익까지 더한 금액을 말한다.
 - 3)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있으며 전기 감사보고서상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클럽의 전기 감사보고서상 미처리결손금에서 표준결손금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2023년 총포괄손익이 0을 초과하는 클럽의 경우 해당 총포괄손익까지 더한 금액을 말한다.
- 13) "총수익"이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더한 수익 합계액을 말한다.

제3조 적용 대상

본 규정은 연맹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.

제4조 회계 원칙

- ① 클럽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발생주의 회계를 준용한다.
- ② 클럽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수익과 비용은 보수주의 원칙에 입각한다.

제5조 연맹의 역할 및 권한

- ① 연맹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 - 1) 클럽이 제출하는 재무자료 검토 및 의견서 제출
 - 2) 선수 등록, 탈퇴, 계약 갱신의 승인 또는 거절
 - 3) 클럽이 제출하는 재무자료 양식 지정

- 4) 클럽의 본 규정 준수 여부 확인
- 5) 재무위원회의 운영
- 6) 그 외 본 규정 내에서 재무위원회가 부여하는 역할
- ② 연맹은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클럽에 재무자료 제출을 기한을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, 클럽은 이에 따라야 한다
- ③ 연맹은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재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.

제2절 재정건전성 확보

제6조 손익분기점 지표의 준수

클럽의 표준이익잉여금은 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7조 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

클럽은 연간 실제 지출한 선수비용이 해당 회계기간 감사보고서상 총수익의 7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해소

- ① 클럽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거나 본 규정 시행 이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클럽은 2030년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.
- ② 완전자본잠식 클럽은 제9조의1(재무개선안)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절 재무자료의 제출 및 승인

제9조 예산 심사

- ① 클럽은 당기 예산의 심사와 선수비용 상한선 지정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클럽의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당기 표준예산
 - 2) 전기 표준손익계산서
 - 3) 재무개선안(완전자본잠식 클럽 한정)

- 4) 기타 연맹이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자료
- ② 재무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고 아래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 - 1) 표준예산 승인 및 선수비용 상한선 지정
 - 2) 표준예산 수정, 보완 요구
 - 3) 재무개선안 승인 또는 수정, 보완 요구

제9조의1 재무개선안

가장 최근 발행된 감사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재무개선안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내부 진단표(신규 완전자본잠식 클럽 한정)
- 2) 향후 2년에 대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사업계획서

제10조 전기 심사

- ① 클럽은 전기 재무제표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직후 본 규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전기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전기 감사보고서
 - 2) 전기 표준손익계산서
 - 3) 전기 선수비용결산
 - 4) 전기 선수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
 - 5) 전기 중개인 합의서
 - 6) 재무개선안 이행보고서
- ② 재무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고 아래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 - 1) 규정 미준수에 따른 시정 명령
 - 2) 규정 미준수에 따른 시정 명령 조건부 집행유예
 - 3) 규정 미준수에 따른 클럽에 대한 징계 제소 청구

제11조 추가 예산 심사

- ① 클럽은 당기 예산의 추가 심사와 선수비용 상한선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당기 표준예산
 - 2) 기타 연맹이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자료
- ② 재무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고 아래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 - 1) 표준예산 승인 및 선수비용 상한선 지정
 - 2) 표준예산 수정, 보완 요구

3) 표준예산 반려

제12조 선수비용 상한선의 활용

- ① 클럽은 재무위원회로부터 선수비용 상한선을 지정받기 전 선수 등록 및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.
- ②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제1항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 클럽은 일부 인원의 예외를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클럽이 제2항에 따라 예외를 신청한 경우 연맹은 심의 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.
- ④ 클럽은 선수 등록, 탈퇴,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 연맹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맹은 검토 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.
- ⑤ 클럽의 당기 선수비용 지출은 선수비용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수의 등록, 탈퇴, 또는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선수비용이 클럽의 당기 선수비용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, 탈퇴, 또는 계약 갱신은 불가하다.

제12조의1 선수비용의 보고

- ① 클럽은 당기 선수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선수에 대하여 연맹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클럽이 제1항에 따라 보고 시, 클럽은 연맹이 양식 내 서술한 보고 양식을 따른다.

제13조 세칙의 운영

본 절에서 정한 재무자료 작성, 제출, 심사, 승인 등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“클럽 재정건전화 준수 세칙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절 재무위원회

제14조 재무위원회의 권한

재무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
- 1) 클럽이 제출한 재무자료의 승인, 반려 또는 수정, 보완 요구
- 2) 클럽의 선수비용 상한선 지정
- 3) 클럽의 본 규정 준수 여부 확인
- 4) 클럽에 대한 시정 명령

- 5) 클럽에 대한 시정 명령 집행유예
- 6) 클럽에 대한 징계 제소 청구

제15조 재무위원회의 구성

- ① 재무위원회는 총재가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재무위원장은 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- ③ 재무위원은 축구, 회계 및 경영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, 교수, 클럽의 전 임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.
- ④ 연맹은 직원 중 1명 이상을 재무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하고, 간사는 재무위원회의 심의 준비 · 소집 통지 · 회의록 작성 ·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재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.

제16조 재무위원회 소집

재무위원회는 매년 3회 소집하고, 그 외 필요한 경우 재무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7조 재무위원회의 심의 사항

- ① 재무위원회는 각 클럽이 제출한 재무자료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) 자료의 진실성 및 적절성
 - 2) 손익분기점 지표 준수 여부
 - 3) 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 여부
 - 4) 재무개선안 이행 여부
 - 5) 기타 본 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② 연맹은 재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8조 재무위원회의 결정 사항

- ① 재무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재무자료가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래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 - 1) 수정, 보완 요구
 - 2) 반려
 - 3) 시정 명령

- 4) 시정 명령 조건부 집행유예
- 5) 연맹 사무총장에게 해당 클럽에 대한 상벌위원회 제소 청구
- ② 재무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클럽에는 재무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해당 클럽이 재무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연맹은 재무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해당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 시정 명령

- ① 재무위원회가 클럽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 - 1) 제6조(손익분기점 지표의 준수) 및 제7조(선수비용 최대 비율의 준수)를 위반한 경우
 - 2) 본 규정상 요구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(또는 미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)
 - 3) 본 규정상 요구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
 - 4)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클럽이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5)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② 시정 명령의 종류는 아래 각 호로 한다.
 - 1)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 감사 클럽 지정
 - 2)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 차감 지정
 - 3)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클럽 예산 조기 심사
- ③ 제2항 제1호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 감사 클럽에 지정된 경우, 연맹은 분기 및 반기 중 클럽에 방문하여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일체 대사할 수 있으며,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차감 지정되는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은 해당 클럽의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한 최근 3개년 평균 선수비용의 80% 미만일 수 없다.
- ⑤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이 차감 지정된 클럽은 추가 예산 심사를 통한 선수비용 상한선 증가가 불가하다. 단, 클럽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수익의 증가 혹은 비용의 감소를 입증하는 경우, 그 금액에 한하여 상한선 증액이 가능하다.
- ⑥ 제2항 제3호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클럽 예산 조기 심사의 경우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재무위원회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규정 제9조 2항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⑦ 클럽이 위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유를 지속적 또는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더욱 과중한 시정 명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,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무위원회는 연맹 사무총장에게 상벌위원회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⑧ 재무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양정하고자 하는 시정 명령에 대해 클럽에 조건부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9조의1 자료 제출 위반

- ① 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이 차감 지정되는 경우, 제19조(시정 명령) 제4항의 제약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연맹은 재무위원회의 일임 하에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클럽에 직접 시정 명령을 양정할 수 있다.
- ③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이 차감 지정된 클럽이 이후 제19조(시정 명령)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라 선수비용 상한선 금액이 차감 지정될 경우 이는 제19조(시정 명령) 제6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과중된다.

제20조 재무위원회의 의결방법

- ① 재무위원회는 재적 재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재무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출석 재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동수인 경우에는 재무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사안이 긴급하여 재무위원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사안이 단순하여 서면 심사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위원장은 전자 문서 등으로 재무위원의 의견을 묻고, 그 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개회 및 의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무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 단,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시정 명령, 제4호의 조건부 집행 유예, 및 제5호의 상벌위원회 제소 청구 결정은 본 항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없다.

제21조 재무위원장 대행

- ① 재무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재무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하고 총재가 신임 재무위원장을 위촉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재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재무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재무위원장이 위촉되기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.

제22조 제척

재무위원장 및 재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무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- ① 재무위원장 및 재무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 클럽의 관계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
- ② 안건 심의 대상자가 공정한 안건 심의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기피 신청을 하거나 기타 재무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

인정한 때

제23조 재심

- ① 재무위원회의 시정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클럽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재심 청구는 시정 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단, 클럽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여,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감면 결정을 하고,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.
- ④ 제재 기록만으로도 재심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거나, 이사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 결정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시행일

- ①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내역

2023/01/16	개정
2024/01/15	개정
2024/11/29	개정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www.kleague.com